

알코올음료 통제 이의제기 절차 관련 신청인 가이드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알코올음료 통제국으로부터 최종 결정을 받았을 경우 먼저 결정을 보고 "즉시 효력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즉시 효력 발생일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4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이의제기 문서는 이메일, 개인 배달 또는 일반 미국 우편의 경우 접수된 날이 "제출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등기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는 경우 우체국에 등기한 시점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의제기 절차를 시작하려면 **이의제기 통지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문서는 이의제기 위원회에 귀하가 통제국의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함을 알려줍니다. 문서는 가능하면 인쇄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 귀하의 이름과 회사명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법적 대리인의 이름(있는 경우) 및 주 변호사의 등록 번호
- 이의제기를 하는 결정을 내린 날짜
- 통제국 최종 결정의 등록 및 파일 번호
- 이의제기 근거(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 위원회가 사례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특정 질문
- 위원회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는 **반드시 송달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이메일로 전달되었는지, 미국 우편으로 전달되었는지 또는 직접 전달되었는지를 증명하여 줍니다.

이 문서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 이의제기 통지서 및 송달 증명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이의제기 위원회에 보내십시오:

- 이메일: abcboard@abcappeals.ca.gov
- 또는 우편: 400 R St., Suite 400, Sacramento, CA 95811

2) 또한 이의제기 통지서 및 송달 증명서를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알코올음료 통제국
3927 Lennane Drive, Suite 100,
Sacramento, CA 95834

비용

제출 수수료는 없지만 통제국으로 부터 증거물 비용 및 청문회 기록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통제국에 기록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신청은 기각됩니다. 자신의 기록 사본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추가 비용이 적용됩니다.

다음 단계

통제국에서 등본과 증거물을 귀하와 위원회에 전달하면 위원회는 청문회 날짜와 적요서 제출 및 구술 변론 요청 마감일을 알리는 서신을 귀하에게 보내드립니다. 또한 사례 번호(AB-XXXX)를 지정해 드립니다. 위원회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이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전자 서비스

이메일로 이 건에 관한 문서를 수신하고자 하면 전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이메일 주소를 통한 전자 서비스에 동의한다고 서신에 간단히 기재하고 서명하십시오. 이 서신을 모든 당사자와 위원회에 보내십시오.

개시 적요서

적요서 서신에 명시된 날짜까지 개시 적요서(20페이지 이하)을 제출하십시오. 송달 증명서를 첨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위원회, 통제국 및 기타 당사자에게 적요서 및 송달 증명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개시 적요서는 통제국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위원회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통제국 청문회에서 증언을 언급하는 경우 해당 증언이 나오는 기록의 페이지를 언급하십시오. 무조건 통제국이 틀렸으며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추가 청문회를 위해 결정을 번복하거나 통제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위원회에 설명하십시오.

위원회는 새로운 증거를 들을 수 없으므로 기존 기록의 일부가 아닌 증거 자료나 기타 새로운 증거를 적요서에 첨부하지 마십시오.

기타 적요서

통제국은 귀하가 개시 적요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후에 회신 적요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귀하는 종결 적요서(10페이지 이하)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7일 이내입니다. 이 종결 적요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통제국으로부터 받은 회신 적요서에 언급된 모든 사항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구술 변론

구술 변론을 위해 출두할 계획이라면 이메일(abcboard@abcappeals.ca.gov)로 예정된 위원회 회의 최소 21일 전에 위원회에 통지하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 중 한 사람만 귀하를 대신하여 출두할 수 있습니다.

구술 변론은 귀하의 적요서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요서에서 이미 말한 내용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위원회는 이미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읽었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증인의

말을 듣거나 증거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만 강조하여 주장하고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에 대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술 변론에는 총 15분이 주어집니다. 통제국 대리인이 15분간의 주장을 발표한 후 발언하기 위해 이 시간의 일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시작하고 통제국에서 답변한 다음 귀하가 최종 변론을 합니다.

최종 명령

위원회는 구술 변론 후 비공개 회의에서 귀하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 최종 명령이 내려지며 귀하는 그 사본을 받게 됩니다.

추가 이의제기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위원회 명령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 법원 또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이 있는 경우 위원회 직원에게 916-445-4005로 전화하거나 abcboard@abcappeals.ca.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법률 자문을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서류 및 제출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